# 2018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서

2017년 10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2017-75 호

○ 제 안 자 : 강서구청장

○ 제안일자 : 2017년 09월 29일

○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1일

○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10월16일) 회의 심사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나. 출연대상 :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 설립 및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다. 출연금액 : 금210,000천원

라. 출연시기 및 방법: 2018. 1월중 현금출연

####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 5.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의한 재단법인의 재정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 제출된 2018년도 출연금 내역을 살펴보면,
  - 재단직원의 인건비 1억 5492만 5천원과, 재단운영 경비 5007만 5천원, 저소득 아동 학습지원사업 5백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액은 변동 없음.
-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12월 17일 설립, 2013년 3월 4일 업무를 개시하여, 나눔사업, 사회복지 실무자교육 등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2018년 출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7. 토론요지 : 생략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임 1. 관계법령 1부.
  - 2.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설명자료 1부.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다.

##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설명자료>

1. 재단설립일 : 2012. 12. 17. (업무개시 : 2013. 3. 4.)

2. 직원 현황 : 총 7명

(이사장(무보수), 팀장 1명, 직원 3명, 파견공무원 2명)

3. 연도별 출연금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출연금 교부액	44	140	150	210	210	210	1) 인건비 2) 경 비 3) 사업비	154,925,000원 50,075,000원 5,000,000원					

4. 2018년도 출연금(2억1천만원) 내역

[단위 : 천원]

		인건비					경비											사업비			
구 분	총계	소 계	급여 팀장 (3급) 1명	및 제 직원 (4급) 1명	수당 직원 (5급) 2명	연월 차 보상 등 별도 수당	퇴직급여	소계	복리 후생 비 (사회 보험)	공 공 요 금 및 제 세	수도 광열 비	소 모 품 비	지급임차료	수 선 유 지 비	차량유지비	보 험 료	지급 수수 료	교 육 훈 편 비	자산 취득 비	소계	저소 득 아동 학습 지원 사업
금 액	210,000	154,925	45,146	38,052	56,605	3,429	11,693	50,075	14,670	2,535	4,680	3,400	6,980	1,200	1,100	2,400	9,490	1,920	1,700	5,000	5,000